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					대한민국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	'21.5.16.(일)	대상을 바꾸는 규제역신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담 당 자	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	

제 목: 5.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非주담대 LTV와 관련된 것으로, 7.1일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 확대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.(연합뉴스 5.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- □ 연합뉴스는 5.16일자 "개인별 DSR 규제, 기분양 중도금·잔금 대출에는 적용 안돼" 제하의 기사에서
 - "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…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."
 - "또,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."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지난 4.29일 발표된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중 5.17일에 우선 시행되는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% 한도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.

- 기사에서 언급된 7.1일부터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는 全 규제지역 內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것으로 금번 행정지도와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.
- □ 한편, 카드론의 경우 현행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이미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, 금번 행정지도에 따라 차주 단위 DSR 적용이 신규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